

서울동부지방법원 2024. 11. 29 선고 2024가단4958 판결 [건물명도 등]

## 전 문

원고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B

피고1. C

2. 주식회사 D

변론 종결2024. 11. 22.

판결 선고2024. 11. 29.

## 주 문

1.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,

가.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㉠, ㉡, ㉢, ㉣, ㉤, ㉥, ㉦, ㉧, ㉨, ㉩, ㉪, ㉫, ㉬, ㉭, ㉮, ㉯, ㉰, ㉱, ㉲, ㉳, ㉴, ㉵, ㉶, ㉷, ㉸, ㉹, ㉺, ㉻, ㉼, ㉽, ㉾, ㊀, ㊁, ㊂, ㊃, ㊄, ㊅, ㊆, ㊇, ㊈, ㊉, ㊊, ㊋, ㊌, ㊍, ㊎, ㊏, ㊐, ㊑, ㊒, ㊓, ㊔, ㊕, ㊖, ㊗, ㊘, ㊙, ㊚, ㊛, ㊜, ㊝, ㊞, ㊟, ㊠, ㊡, ㊢, ㊣, ㊤, ㊥, ㊦, ㊧, ㊨, ㊩, ㊪, ㊫, ㊬, ㊭, ㊮, ㊯, ㊰, ㊱, ㊲, ㊳, ㊴, ㊵, ㊶, ㊷, ㊸, ㊹, ㊺, ㊻, ㊼, ㊽, ㊾, ㊿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

선내 E호 부분 56㎡를 인도하고,

나. 2020. 12. 21.부터 위 선내 E호 부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,383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

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## 청 구 취 지

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인도 및 지급을 구하는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.

## 이 유

### 1. 청구의 표시

[별지]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### 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최아름

별지